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09

제출년월일 : 2021.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항 신설(안 제6조)

·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발전 도모

·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위원의 임기·연임·해촉 규정 마련

○ 위원회 구성(안 제7조) 및 운영(안 제8조), 수당(안 제9조) 및 존속기한(안 제10조) 조항 신설

· 회의 개최 및 의결 규정 마련

·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마련

○ 그 외 조례 조문의 전반적인 정비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붙임4

에너지정책과 - 김혜령 - 2021-05-12 16:11:30 - ***.*.***.121

□ 사전예고(결과) : 붙임5

○ 입법예고 : 2021. 2. 16. ~ 3. 8. (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6

○ 방침결정문 : 붙임7

에너지정책과 - 김혜령 - 2021-05-12 16:11:30 - ***.*.***.121

〈 붙임 1 〉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중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주변지역 거주자로서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안산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에너지정책과 - 김혜령 - 2021-05-12 16:11:30 - ***.*.***.12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지원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매년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에너지정책과 - 김혜령 - 2021-05-12 16:11:30 - ***.*.***.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에너지정책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에너지정책과장 백 현 숙
	담당·팀장 직위·성명	신재생에너지팀장 원 종 섭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혜 령 (행정 3019)

에너지정책과 - 김혜령 - 2021-05-12 16:11:30 - ***.*.***.121

〈 붙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에너지정책과 - 김혜령 - 2021-05-12 16:11:30 - ***.*.***.121

	풍부한 사람 2. 주변지역 거주자로서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안산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지원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

에너지정책과 - 김혜령 - 2021-05-12 16:11:30 - ***.*.***.121

	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매년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준용) ----------「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너지정책과 - 김혜령 - 2021-05-12 16:11:30 - ***.*.***.121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609

제안년월일 : 2021년 6월 18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 수정이유

○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주체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위원수 조정과 위원회 소집 관련 반복 규정을 정비코자 수정함.

□ 주요골자

○ 위원회 심의 사항, 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주체를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수정.(안 제6조제2항제4호, 안 제7조제3항, 안 제7조제3항제5호, 안 제7조제7항)

○ 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수정.(안 제7조제1항)

○ 위원회 소집에 관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삭제.(안 제8조제1항)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1-07-14 10:18:16 - ***.*.***.35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제4호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1-07-14 10:18:16 - ***.*.***.35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1. ~ 3.(개정안과 같음)
	2.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 시장 ----------
<신 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15명 ----------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1-07-14 10:18:16 - ***.*.***.35

	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 ---------- ---------- ---------- ---------- ---------- ---------- 시장 -----.
	1.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 4.(개정안과 같음)
	2. 주변지역 거주자로서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안산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 시장 --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 ⑥(개정안과 같음)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1-07-14 10:18:16 - ***.*.***.3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지원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시장---------- ---------- ---------- ----------. 1. ~ 5.(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제8조(위원회의 운영) 〈삭제〉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1-07-14 10:18:16 - ***.*.***.35

	된다. ② ~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 ② (개정안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1. ~ 3.(개정안과 같음)

의회사무국 - 정현석 - 2021-07-14 10:18:16 - ***.*.***.35